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교규칙

| 장 | | 조항 | | 내 용 | 비고 |
|-----|-----------------|------|-----------|--|----|
| 장번호 | 명칭 | 조항 | 명칭 | | |
| 제1장 | 총칙 | | | | |
| | | 제1조 | 목적 |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의거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제2조 | 교육목표 | 본교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대한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실용음악에 관한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제3조 | 위치 | 본교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8가길 8에 둔다. | |
| 제2장 |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 | | | |
| | | 제4조 | 수업연한 |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 |
| | | 제5조 | 입학자격 |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중학교 졸업자 ②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 제3장 | 학과 학급수 및 학생정원 | | | | |
| | | 제6조 | 학급편제 | ①학급수는 남녀 공학으로 1학년 3학급, 2학년 3학급, 3학년 3학급, 총9학급으로 한다. ②학과는 실용음악과(보컬, 드럼, 베이스, 기타, 건반, 관악, 미디작편곡의 전공)와 뮤지컬과를 둔다. | |
| | | 제7조 | 학생정원 | ①본교의 학생 정원은 총 210명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원의외로 입학 및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3. 기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자 ④제2항 규정에 의거 정원의외로 입학 및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 인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기준에 의한다. | |
| 제4장 |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 | | | | |
| | | 제8조 | 교육과정 | ①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대한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바탕으로 본교의 교육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운영하되 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②「결정학기수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교육과정과 운영방안 등에 관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시행한다. | |
| | | 제9조 | 학교교육과정위원회 | ①본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②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각 학년 및 학과별 교육과정 편성 2. 학칙에 정해지지 않은 체험활동의 운영 및 인정기간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③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은 본교 교사, 학부모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또는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 |
| | | 제10조 | 수업일수 | ①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제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 교육청에 보고한다. | |
| | | 제11조 | 수업시간 및 운영 | 수업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수업이 시작되는 시각은 오전9시 정시로 하며, 끝나는 시간은 시간표에 정해진 수업종료 시간을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학교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업시각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 | | 제12조 | 교사·학업성적평가 | ①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간 학사 일정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해 정기교사를 학기별로 실시한다. ②각 교과목의 평가는 지필평가, 수행평가, 실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본교 학생의 학업성적 평가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

| 장 | 조항 | | 내 용 | 비고 |
|-----|------------------|---------------|---|----|
| | 장번호 | 명칭 | | |
| | 제13조 | 교외체험학습 | <p>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교외체험학습은 본교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체험학습(이하 '학교별 체험학습')과 그 이외에 학생 개별적으로 실시하거나 본교 이외의 기관(단체)이 주최·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체험학습(이하 '개인별 체험학습')으로 나눈다.</p> <p>③ 개인별 체험학습은 보호자가 실시 7일 전까지 체험학습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학교별 체험학습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p> <p>⑤ 학생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체험학습의 경우는 학생의 희망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하되, 국외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로 인정한다.</p> <p>⑥ 제5항 이외의 체험활동의 운영 및 인정기간은 제19조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p> | |
| 제5장 | 학년, 학기 및 휴업일 | | | |
| | 제14조 | 학년 및 학기 | <p>학년 및 학기운영은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p> <p>① 학년도는 3월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p> <p>② 학년은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p> | |
| | 제15조 | 휴업일 | <p>①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하되,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9월11일) 3. 하계휴가 4. 동계휴가 5. 학년말 휴가 <p>② 제1항 1~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p> <p>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학교장의 권한에 따라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p> <p>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이 등교를 명할 수 있다.</p> <p>⑤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봉사활동 등의 실습을 과할 수 있다.</p> <p>⑥ 제 1항 각 호 외에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p> | |
| 제6장 | 수료 및 졸업 | | | |
| | 제16조 | 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 <p>① 학교장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성적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p> <p>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p> <p>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해 졸업장을 수여한다.</p> | |
| | 제17조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본교는 학교 특성상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부여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 |
| 제7장 | 입학, 전학, 편입학, 재입학 | | | |
| | 제18조 | 입학시기 | <p>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학 시기는 매년 10월 입학전형 오디션을 거쳐 3월 초에 입학한다.</p> <p>② 학생의 전입학·편입학·재입학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및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한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p> | |
| | 제19조 | 입학방법 등 | <p>① 본교의 입학방법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따로 공고하는 신입생 전형요강에 의한다.</p> <p>② 본교의 신입생 입학전형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입생 선발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p> <p>③ 신입생 선발시 학생은 지원하고자하는 전공학과를 선택한 후 본교의 입학전형절차를 통하여 입학여부가 결정이 된다.</p> | |
| | 제20조 | 서약서 및 보증인 | <p>입학(전·재·편입학 포함)을 허가받는 자는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p> <p>③ 보증인·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장이 부 보증인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p> | |
| | 제21조 | 재입학 | <p>① 본교를 자퇴한 자가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의 범위내에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허가를 허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의하여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한다.</p> | |
| | 제22조 | 전·편입학 | <p>① 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본교에 전·편입학 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학교생활 기록부 전산 자료(원본)와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 및 입력하지 못한 각종 보조부 자료(성적, 월별 출결상황 등), 건강기록부, 봉사 활동 및 특별활동 평가 기록부 등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해당학년에 수학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④ 학기 중 본교로의 편입학을 원할 시에는, 그 학기 과정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가능하며, 입학 절차와 동일하게 오디션과 면접을 실시한다. 단, 해당학기의 수업진도에 대해서는 스스로 학습하여야 한다.</p> | |

| 장 | | 조항 | | 내 용 | 비고 |
|-----|-------------|------|-----------------------|---|----|
| 장번호 | 명칭 | 조항 | 명칭 | | |
| | | 제23조 | 귀국 학생 등의 입학, 전학 및 편입학 | <p>①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 및 편입학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p> <p>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허가를 받은 자의 학년배정은 외국 정규 학교의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되,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③귀국자 대상 입학 및 편입학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p> | |
| 제8장 | 휴학, 퇴학 및 상벌 | | | | |
| | | 제24조 | 휴학 및 복학 | <p>①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p> <p>②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2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p> <p>③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④휴학자의 복학은 다음 학년도 휴학 일 이전에 복학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당해 학년도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 복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를 원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p> <p>⑤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p> <p>⑥복학하려는 자는 복학원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 |
| | | 제25조 | 보호자 | <p>①본교 재학생의 보호자는 부모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다른 자를 보호자로 할 수 있으나 재학 중 학비 기타 신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p> <p>②보호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 |
| | | 제26조 | 자퇴 | 스스로 자퇴(타교 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내용을 증빙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서 자퇴원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 | 제27조 | 표창 | <p>①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성실하고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과 효행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의회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학생 표창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p> | |
| | | 제28조 | 공적심의회 | <p>①학교장은 그 소속으로 공적심의회를 두어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의한다.</p> <p>②공적심의회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내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의 2. 교외 표창대상자 추천을 위한 공적심의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히 요청한 사항 <p>③공적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위원은 본교 교원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p> <p>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p> | |
| | | 제29조 | 징계 | <p>①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p>②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처분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학생선도규정으로 정한다. 단,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p> <p>③ 학교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④ 학교장은 학생징계를 위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p> <p>⑤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학교폭력 사안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p> | |
| | | 제30조 | 징계 외의 지도 등 | <p>①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훈육·훈계 등의 지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두주의 2. 격리조치 3. 상담지도 4. 특별과제부여 <p>②제1항 규정에 의한 훈육 훈계의 지도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지도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p> <p>③학생들의 징계 외의 지도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p> | |

| 장 | | 조항 | | 내 용 | 비고 |
|-----|--------|------|-----------------|--|----|
| 장번호 | 명칭 | 조항 | 명칭 | | |
| | | 제31조 | 퇴학처분 | <p>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퇴학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p>②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③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에서 최종 퇴학 조치된 자는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p> | |
| | | 제32조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 <p>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자치위원회는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p> <p>자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p> | |
| | | 제33조 | 학생선도위원회 | <p>① 본교 학생들의 학교폭력외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설치한다.</p> <p>② 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은 본교 교원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p> <p>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p> | |
| 제9장 | 학생자치활동 | | | | |
| | | 제34조 | 학생활동지원 | 학교장은 학생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적인 학생 활동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 |

| 장 | | 조항 | | 내 용 | 비고 |
|----------------|-----------|------|--------------|--|----|
| 장번호 | 명칭 | 조항 | 명칭 | | |
| | | 제35조 | 총학생회 | ① 본교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학생회를 둔다. ② 총학생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3학년) 2. 부회장 각 학년 1명씩 ③ 총학생회에는 대의원과 분야별 기능을 담당할 부서를 둔다. ④ 총학생회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생의 복지 증진에 관한 활동 2. 학교 행사의 기획·운영에 관한 활동 3.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제시 활동 4. 학생자치활동 예산의 운영에 관한 활동 5. 학생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참석 및 의견 제시 활동 6. 학교 전통의 정립, 지역사회와 학생 참여에 관한 활동 7. 각종 봉사 활동 8.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⑤ 총학생회 조직, 임원의 선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
| 제10장 | 수업료 등의 징수 | | | | |
| | | 제36조 | 수업료 및 입학금 |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는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본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 |
| | | 제37조 | 수업료 감면 기준 |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현원의 15% 내에서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
| | | 제38조 | 기타 비용 징수 |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수 할 수 있다. | |
| | | 제39조 | 수업료 등의 반환 | 수업료 등의 반환사유 및 기준은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
| 제11장 | 학교규칙 개정 | | | | |
| | | 제40조 | 학교규칙 개정 절차 | ①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규정은 상위법의 개정과 학교장이 개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개정한다. ②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직원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확정한다. ③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 개정이유, 주요내용,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예고문을 학교홈페이지, 학교신문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공고된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립학교장이 제안한 학칙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학교법인 이사회를 거쳐 학교법인이사장이 변경인가를 신청하고 관할 교육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⑥ 학교장은 학칙(변경)인가서를 접수한 경우 학칙을 확정 공포한다. | |
| | | 제41조 | 학교규정 제·개정 절차 | ① 학교장은 학칙의 학교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제41조 제1항내지 제5항 규정을 준용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립은 '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공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규정의 제정 및 개정시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
| 부칙(2008.12.23) | | | | | |
| | | 제1조 | 시행일 |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부칙(2010.02.25) | | | | | |
| | | 제1조 | 시행일 |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부칙(2012.03.09) | | | | | |
| | | 제1조 | 시행일 | 이 학칙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
| 부칙(2015.03.01) | | | | | |
| | | 제1조 | 시행일 |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 | | | ①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
| 부칙(2016.05.15) | | | | | |
| | | 제1조 | 시행일 | 이 학칙은 201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
| | | | | ①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
| 부칙(2016.06.27) | | | | | |
| | | 제1조 | 시행일 | 이 학칙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
| | | | | ①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